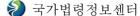
(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)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



[시행 2021. 3. 1.] [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1-4호, 2021. 2. 24., 일부개정.]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(수산방역과), 051-720-3041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약사법」제31조제9항 및 제42조제5항, 「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」제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안전성·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와 소해면상뇌증 등 위해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는 원료성분 함유품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조·수입품목 허가(신고)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의제조·수입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)**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 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 - 1. 무기비소제제
 - 2. 피리메타민제제(다만, 수의사 진료용 주사제는 제외한다)
 - 3. 항갑상선물질
 - 4. 성장촉진호르몬제(다만, 생체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과 그 유도체 및 시험기관에서 무해함이 인정된 제 제는 제외한다)
 - 5. 니트로후란제제(후라졸리돈, 후랄타돈, 니트로푸라존, 니트로빈 및 니트로푸란토인 등)
 - 6. 클로람페니콜 제제(다만, 외용제는 제외한다.)
 - 7. 디메트리다졸
 - 8. 기타 발암성 등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당펩타이드계 항생제(아보파신, 반코마이신 등), 클로르프로마진, 클렌부테롤, 이프로니다졸, 말라카이트-그린, 콜치신, 스트리키닌, 디에칠스틸베스트롤, 유기염소제 및 클로르포름 함유제제.
 - 9. 카바독스, 로니다졸, 올라퀸독스, 답손 및 메트로니다졸 함유제제(다만,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 사용되는 제제에 한한다.)
- 제3조(소해면상뇌증 등 위해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는 성분함유 품목) 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해면상뇌증 등 국민보건에 위해가 우려되는 질병의 감염소지가 있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품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. 다만, 동물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품목의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물학적 제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미생물은 제외한다.
 - 1. 소해면상뇌증 고발생 국가(년간 발생이 100만두당 100두를 초과하는 국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품목
 - 2. 소해면상뇌증 발생국가(고발생 국가는 제외)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가중 소해면상뇌증 비발생 국가의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품목. 다만, 젤라틴(일련의 제조공정에서 가압 세정에 따라 지방제거처리, 산에 의한 탈회처리, 알칼리 처리 및 여과와 섭씨 138℃에서 4초간의 가열처리 또는 그 이상의 처리가 행하여 진 것에 한함. 이하 같다), 유, 분, 뇨, 심장, 신장, 유선, 난소, 타액, 타액선, 정소, 골격근, 갑상선, 자궁, 태아조직, 담즙, 골(두개골 및 척추는 제외), 연골조직, 결합조직, 털, 위, 혈청(소 또는 태아 등에서 유래된 것에 한함) 및 피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별지 또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국제동물위생규약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3. 기타 소해면상뇌증 비발생국의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품목. 다만, 젤라틴, 유, 분, 뇨, 심장, 신장, 유선, 난소, 타액, 타액선, 정소, 골격근, 갑상선, 자궁, 태아조직, 담즙, 골(두개골 및 척추는 제외), 연골조직, 결합조직, 털, 피부, 위, 비점막, 말초신경, 골수, 간장, 폐, 췌장, 흉선 및 혈액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별지 또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국제동물위생규약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반추동물 유래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확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 - 1. 당해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명칭
 - 2. 당해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와 관련된 축종, 장기, 기타의 조직의 명칭과 원산국
 - 3. 당해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제조업체명와 그 소재지



4. 당해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제조일자 및 제조번호

제4조(재검토기한)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1-4호, 2021. 2. 24.>

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별표 / 서식

[별지] 반추동물 유래물질중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에 사용(함유) 가능한 원료의 기준(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단서관련)

국가법령정보센터